

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자원순환과

제정 2014· 3· 21 조례 제1026호
일부개정 2015· 5· 4 조례 제1114호
일부개정 2015· 8· 10 조례 제1130호
(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)
일부개정 2018· 7· 31 조례 제1414호
일부개정 2020· 10· 7 조례 제1628호
(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)
일부개정 2023· 11· 1 조례 제200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폐기물처리시설”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2. “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”이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2조의2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3· 11· 1>

[본조신설 2018· 7· 31]

제3조(세입)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국·도비 보조금
3.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
4.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익금

제4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

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

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하며,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광역화 또는 민간업체에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.

1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
2.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, 증축,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
3.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

제5조 삭제 <2015·5·4>

제6조(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) 특별회계 세입·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. <개정 2015·8·10>

1. 징수관, 재무관 :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국장
2. 분임징수관, 분임재무관 :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과장
3. 지출원, 수입금출납원 :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팀장

제7조(전용금지)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. <개정 2020·10·7>

제8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)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5·4 조례 제11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8·10 조례 제1130호,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분임경리관”을 “분임재무관”으로 한다.

⑤ 생략

부칙 <2018·7·31 조례 제14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10·7 조례 제1628호,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「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이 회계목적”을 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”으로 한다.

③ 및 ④ 생략

부칙 <2023·11·1 조례 제200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